

이 보도자료는 2019. 4. 9.(화) 14:00 (2019. 4. 10.자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2차장검사 노정환

전화 032-861-5003, 팩스 032-860-430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보도자료

2019. 4. 9.(화)

자료문의 : 외사부장실
전화번호 : 032-861-5129
주책임자 : 외사부장 김도형

제 목

허위난민 양산 난민브로커 단속 결과 - 검찰·출입국외국인청¹⁾ 공조수사로 총 25명 인지, 13명 구속 -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8. 10.부터 2019. 4.까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수사로 허위난민을 양산하는 다수의 난민브로커를 단속하여, 총 25명을 인지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수사결과, ① SNS광고 등으로 허위난민을 모집하는 모집책 ② 허위사유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통역인)’ ③ 전담사무장 등을 고용하여 난민신청을 알선한 변호사 및 행정사 ④ 난민신청에 필요한 체류지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입실계약서 등)를 허위작성하여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하였음
 -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출신들을 상대로 한 난민브로커 활동 확인
 - 일부 허위난민 여성들은 보도방 조직에 소속되어 성매매에도 종사
- 허위난민 관련 범죄는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출입국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범죄임
-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난민 관련 범죄의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할 예정임

1) 본 보도자료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 2개의 청을 의미함

1

수사착수 배경

① 허위 난민신청 사례 다발로 난민브로커 엄단 필요

- 작년 5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언론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허위난민이 우려되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 인천지역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빈번한 지리적 특성이 있어 외국인 거주자도 많고 출입국외국인청 송치사건을 통해 난민브로커가 개입된 허위난민신청 사건이 일부 확인된 바도 있었음²⁾
- 이에 국제범죄중점검찰청인 인천지검과 관내 출입국 사무를 전담하는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법을 악용한 장기 불법 체류·취업 시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② 검찰·출입국외국인청 공조수사 본격 착수

-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 후 불법 취업활동을 하는 '허위 난민'과 그 배후에서 이를 조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난민브로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조수사 진행³⁾
- 범죄정보를 공유하여 수사계획을 수립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 서류 분석, 난민신청인 조사 등 초동수사를, 검찰은 변호사, 브로커 등 주요 범죄자에 대한 압수수색·검거 등 마무리수사를 담당하였음
- 공조수사 개시 이래 약 4,000건의 난민신청 접수서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구소련권 국가 및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국가별로 특정 난민신청 대행 사무실이나 특정 통역인, 대리인, 공인중개사가 다수 확인되어 브로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음

2) 2018. 7. ~ 2018. 9.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난민신청 알선자 6명(3명 구속/3명 불구속)을 적발하여 송치

3) 2018. 9. 19.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난민 알선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아카데미』 개최, 2018. 10. 수사실무협의회 후 공조수사 방법 등 협의, 2019. 4.까지 공조수사 진행

2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 행정사 주도 난민브로커 형

순번	피의자(나이,국적)	범죄사실 요지	처리결과	비고
1	A O O (54세, 남, 한국)	108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4. 8. 불구속 기소 (법원 구속영장 기각)	행정사
2	B O O (54세, 남, 한국)	10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4. 8. 불구속 기소	행정사
3	C O O (38세, 여, 몽골)	66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4. 8. 불구속 기소 (법원 구속영장 기각)	모집책 겸 통역인
4	D O O (34세, 남, 베트남)	1명 허위난민신청 알선[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4. 8. 기소중지	모집책 겸 통역인

□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브로커 형

순번	피의자(나이,국적)	범죄사실 요지	처리결과	비고
1	E O O (53세, 남, 한국)	183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 지급[출입국관리법, 변호사법위반]	2019. 2. 1. 구속 기소	변호사
2	F O O (53세, 남, 한국)	185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 수령[출입국관리법, 변호사법위반]	2019. 1. 14. 구속 기소	변호사 사무장
3	G O O (47세, 여, 한국)	185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1. 14. 구속 기소	변호사 사무장
4	H O O (34세, 여, 우크라이나)	57명 허위난민신청 알선[출입국관리법위반]	2018. 11. 13. 구속 기소	스토리 작가
5	I O O (33세, 여, 필리핀 귀화)	65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위반]	2019. 3. 7. 구속 기소	스토리 작가

□ **자생적 외국인 난민브로커** 型

순번	피의자(나이,국적)	범죄사실 요지	처리결과	비고
1	J○○ (37세, 여, 러시아)	124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 체류지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위반]	2018. 11. 8. 구속 기소	총책 겸 통역인
2	K○○ (28세, 남, 카자흐스탄)		2018. 11. 8. 구속 기소	모집책
3	L○○ (60세, 남, 한국)	83명의 난민에게 위조임대차계약서 제공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사문서위조 등]	2019. 1. 23. 불구속 기소 (법원 구속영장 가자)	공인중개사
4	M○○ (70세, 남, 한국)	47명의 난민에게 허위입실계약서 제공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2019. 3. 29. 불구속 기소	고시원 관리인
5	N○○ (48세, 남, 카자흐스탄)	8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체류지 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위반]	2018. 12. 21. 구속 기소	총책
6	O○○ (28세, 남, 러시아)	19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체류지 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위반]	2018. 12. 19. 기소중지	통역인 (국외도피)
7	P○○ (28세, 여, 카자흐스탄)	18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체류지 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위반]	2019. 1. 15. 구속 기소	총책

□ **유형업소 취업 여성 전문 난민브로커** 型

순번	피의자(나이,국적)	범죄사실 요지	처리결과	비고
1	Q○○ (45세, 남, 한국)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가 수반되는 유형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한편, 허위난민신청까지 알선 [출입국관리법,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9. 2. 27. 구속 기소	총책
2	R○○ (37세, 남, 한국)		2019. 2. 27. 구속 기소	자금관리책
3	S○○ (29세, 여, 키르기스스탄)		2019. 2. 27. 구속 기소	통역인
4	T○○ (38세, 남, 한국)		2019. 2. 27. 불구속 기소	항공티켓담당
5	U○○ (40세, 남, 한국)		2019. 2. 27. 불구속 기소 (법원 구속영장 가자)	픽업담당
6	V○○ (50세, 여, 한국)	허위일정표 제공 등을 통해 보도방 여성 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조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2019. 3. 11. 불구속 기소	여행사대표
7	W○○ (28세, 남, 러시아)	18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체류지 증명서류 제출[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 위반]	2019. 4. 5. 구속 기소	난민브로커 (총책)
8	X○○ (23세, 남, 카자흐스탄)		2019. 4. 5. 불구속 기소	난민브로커 (총책보조)
9	Y○○ (27세, 남, 우즈베키스탄)		2019. 4. 5. 기소중지	난민브로커 (모집책, 국외도피)

【 난민브로커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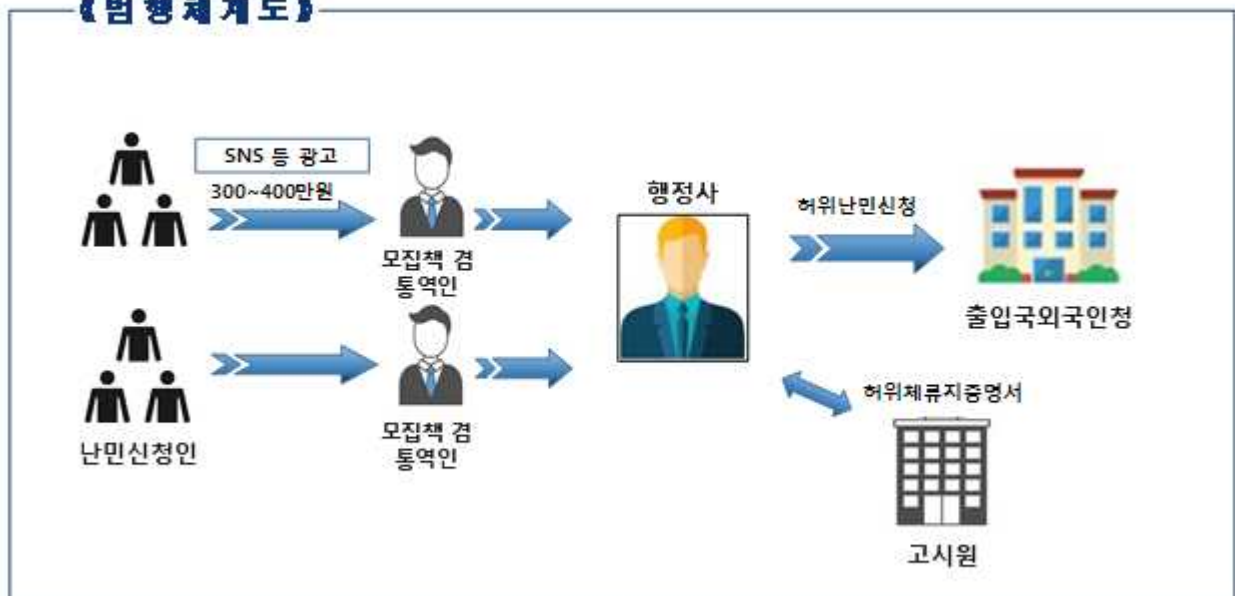
- ① 행정사 사무실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워 초기부터 난민신청을 대행해 왔고, 점차 통역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인센티브를 약속하여 신청인들을 다수 확보한 후 정형화된 허위난민 사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사 주도 난민브로커』 조직이 발생
- ② 난민신청 대행이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여, 전문적인 ‘스토리메이커’를 고용하고 변호사가 직접 난민 인터뷰에 동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조직적인 형태의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브로커』 조직으로 발전
- ③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이나 통역의 경험을 하면서 난민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습득한 외국인들이 모집책, 픽업기사 등과 함께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난민신청을 대행하는 『자생적 외국인 난민브로커』도 출현
- ④ 한편 유흥업소에 취업할 목적으로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시키기 위해 유흥업소 여성들만을 상대로 난민신청을 대행하는 『유흥업소 취업 여성 전문 난민브로커』 조직도 등장

① 행정사 주도 난민브로커 型

- 행정사가 난민브로커를 사무원으로 고용한 후 모집책 겸 통역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7. 5.부터 2019. 2.까지 베트남, 몽골 국적의 외국인 108명에 대한 허위난민신청을 대행한 행정사 사무실을 적발
- 모집책 겸 통역인들은 SNS광고 등을 활용하여 건당 300~400만 원에 난민신청인을 모집하고, 행정사들은 난민신청 사유 및 체류지증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
- 특히, 행정사들은 국가별로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의 정형화된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인적사항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양산하였고, 고시원 업주들로부터 15~20만 원에 허위내용의 입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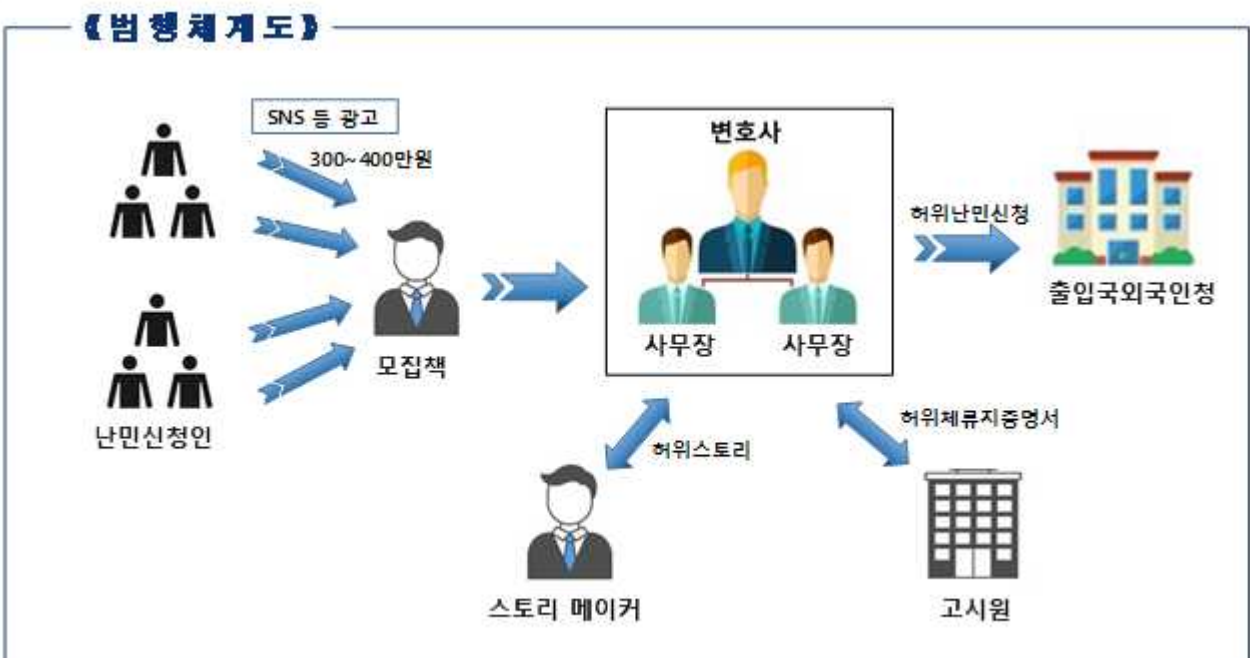
※ 허위 난민 사유 : <베트남> ① VIET TAN 당원인데 공산당원인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박해를 받았다 ② 통일교(문선명교)를 믿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몽골> ① 민주당 당원인데 인민당원인 직장동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② 남편(또는 아내) 집안이 특정 종교를 믿는데 같이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등으로 기재

【범행체계도】



②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브로커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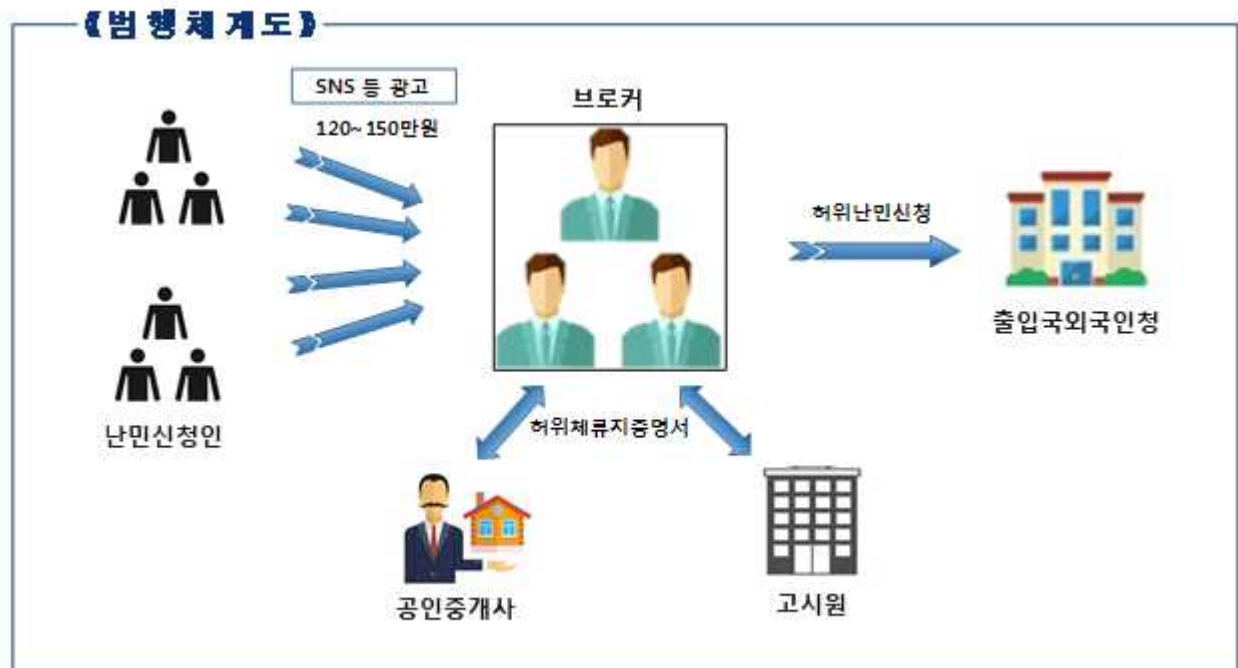
- 변호사가 외근사무장을 통해 난민신청 사건을 수입하고, 사무장은 전문 '스토리메이커'와 모집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6. 10.부터 2018. 11.까지 필리핀, 태국 국적의 외국인 183명에 대한 허위난민신청을 대행한 사례 적발
- 사무장은 모집책을 통해 건당 300~400만 원에 난민신청인을 모집하고 허위 체류지증명서류를 마련하였으며, 스토리메이커는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사무장에게 전송하고,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수입료의 30~5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터뷰에 동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
 - ※ 허위 난민 사유: ① 무장 이슬람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②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기재
- 또 변호사는 난민신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후속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음
 - ※ 변호사는 2억 원 상당을, 사무장 2명은 각각 1억 원 상당을 취득



③ 자생적 외국인 난민브로커 형

-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신청 방법을 습득한 후 한국어나 영어에 능통한 통역인과 함께, 자국(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동포들로부터 건당 120~150만 원을 받고 2017. 9.부터 2019. 1.까지 함께 187명을 모집하여 난민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한 자생적 외국인 브로커 조직들을 적발
- 소위 자생적 외국인 난민브로커 조직들은 SNS광고를 통해 다수의 난민 신청인을 모집하였고, 허위난민 일부는 실제로는 유흥업소나 공장 등에 불법 취업하여 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인이나 고시원 관리인에게 5~15만 원을 주고 받은 허위의 체류지증명서류를 제출
- 외국인 난민브로커 조직은 2~3명의 소규모 형태이고, 브로커 조직들 간 저가 수수료 경쟁을 하는 행태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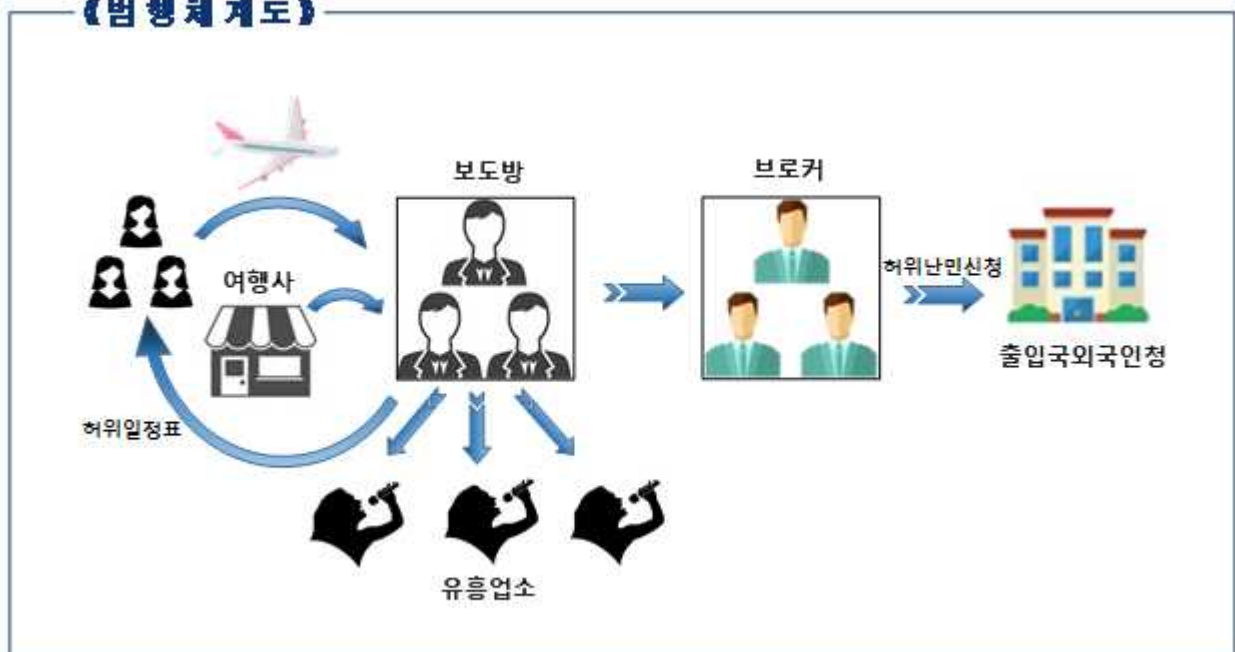
※ 초기 수수료는 2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브로커 조직 사이에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서 수수료가 100만 원대까지 하락



④ 유흥업소 취업 여성 전문 난민브로커 型

- 2017. 8.부터 2019. 2.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입국시켜 오피스텔 숙소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고용 알선한 속칭 보도방型 난민브로커 조직 적발
- 위 난민브로커 조직은 총책, 자금관리책, 통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현지 여성을 면접하고 비행기 탑승권을 준비한 티켓담당, 입국을 위해 허위 여행일정표를 제공한 여행사담당, 유흥업소로의 이동을 맡은 픽업담당도 확인
-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미모 위주로 선발하여 무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케 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체류수단을 확보하였고, 위 유흥업소 종사자들 대부분은 성매매까지 한 사실이 확인됨
 - ※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약 200명 중 90명이 사증면제(B1)에서 난민신청자(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음
 - ※ 허위 난민 사유 : ① 친구의 남편이 '네 번째 처가 되어라'며 자신을 강간하였다 ② 주변사람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지만 병원과 경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재

《범행체제도》



4

수사결과 분석

① 국내에 만연된 난민브로커 조직 다수 적발

- 난민법의 난민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벌이를 하려는 불법 체류·취업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그들의 배후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난민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

※ 난민브로커들은 facebook 등 SNS에 자국어로 버젓이 허위난민신청 광고를 게재하여 난민신청인들을 손쉽게 모집하였음

- 난민수사 본격화 이후, 인천지역 내 난민신청 건수 급감

- 2019년 1~2월 난민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66% 감소4)

②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확인

- 단순 서류작업을 수행하고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 허위난민신청을 영업적으로 대행한 변호사와 행정사들을 적발
- 이들을 도와 난민신청자들을 모집한 사무장들과 허위난민사유를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일명 '스토리메이커(통역인)'도 적발

③ 불법 체류·취업 위해 난민법상 허점 악용

- 난민신청인 대부분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후 G-1비자를 취득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장기간 불법적인 체류·취업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

※ 구속된 외국인 난민브로커 5명 중 3명이 난민신청자이고, 그 중 1명은 2016. 11. 난민신청 후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거쳐 2년 5개월 가량 체류 중이었음

- 대부분 허가 없이 제조공장 등에 불법취업하고, 일부 여성들은 보도방 조직에 소속되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례도 적발

구분(인천 지역)	1월	2월	합계
2018년 난민신청건수	369건	330건	699건
2019년 난민신청건수	119건	120건	239건
전년대비 증감율	▼68%	▼64%	▼66%

4)

5

향후 계획

- 검찰은 수사결과 확인된 허위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퇴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관련 법제 개선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 지속 협력 예정
 - ▶ <신속한 난민 결정 및 재신청 악용 방지책 마련>
난민불인정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는 제도가 허위난민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난민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 <난민신청 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허위난민신청은 서류접수 대리인·통역인 및 체류지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내역을 전산화하고 분석하여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난민신청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질서를 확립하고, 난민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정한 난민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별첨]

난민신청 현황 및 난민 결정 절차 개요

- 2013. 7.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 지역은 2017. 3.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이후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

▶ 전국 접수 난민신청 현황 (2013년~2018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난민 신청	1,574건	2,896건	5,711건	7,541건	9,942건	16,173건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접수 난민신청 현황 (2016년~2018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난민 신청 (전국대비 비율)	64건 (0.84%)	2,252건 (22.6%)	2,415건 (14.5%)

- 난민신청인은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통상 난민불인정 결정 이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3년 이상 소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활동도 가능**

※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21조(이의신청),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 난민인정 절차 》

